

대구광역시 달성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

[김보경 의원 대표발의]

의안 번호	1987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1. 9. 27.

발의의원 : 김보경 의원, 도일용 의원

1. 제안이유

우리군의 드론 활용을 촉진하고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여 드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2조)
- 나. 군수의 책무,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(안 제3조~제4조)
- 다.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(안 제5조~제6조)
- 라. 드론산업의 육성 및 사업확대에 관한 사항(안 제7조~제8조)
- 마. 재정지원, 드론체험 및 교육에 관한 사항(안 제9조~10조)

3. 제정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

대구광역시 달성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드론”이란 「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.
2. “드론산업”이란 드론을 제작·운용하기 위한 산업과 드론을 이용하여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등을 말한다.

제3조(군수의 책무)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(이하“군수”라 한다)는 드론 기술의 공유와 확산을 통한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드론산업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.

③ 군수는 드론의 운용과 드론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드론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5조(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 등의 수립·시행) 군수는 드론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(이하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1. 드론산업의 동향과 향후 전망

2.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
3.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
4.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
5. 그 밖에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6조(실태조사)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드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·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.

제7조(드론산업의 육성) 군수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학계,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드론산업 개발 및 수요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양성
2. 드론 전시회,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
3.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
4. 드론산업 기반 조성 사업
5. 드론 관련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실시와 이와 관련한 시설의 설치
6. 드론 사업자의 창업·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
7. 드론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
8. 드론산업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
9. 그 밖에 군수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8조(드론 활용사업의 확대) 군수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드론의 활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1. 건설현장의 공사추진상황 및 안전·품질 등의 실적관리
2.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
3. 방재·재난·구조·구호 등의 업무
4. 주민·공무원 드론 경기대회 및 박람회 개최
5. 산림 또는 공원 등의 예찰활동 및 관리
6. 지적재조사 등 토지측량
7. 문화재관리 및 관광자원 홍보자료 제작
8. 비료 또는 농약 살포,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

9.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·분석

10.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

제9조(재정지원) ① 군수는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·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 및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10조(드론체험 및 교육) ① 군수는 드론 활용의 저변 확대를 위해 군민을 대상으로 드론 운영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드론 운행 및 드론산업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드론 조종자 및 드론산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1. 드론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

2. 드론산업 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교육

3. 그 밖에 군수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